

[별표 11] <개정 1995.8.31>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47조제1항관련)

조종자의 자격	조종범위
열관리기사 1급 열관리기사 2급 보일러기능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2급	모든 검사대상기기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0kg/cm ²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m ² 이하인 것. 2. 온수 발생 또는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출력이 50만kcal/h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

1. 계속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경우는 조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가스용 보일러의 조종자는 위의 자격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가스용 보일러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